

1998. 2. 19

# 檢 討 報 告 書

충청북도 노인종합 복지회관 설치및운영조례안

教育社會委員會 專門委員

#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

1998. 2.19  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지사 제출

## 2. 제안및회부일자

○ 제안 : 1998년 2월 11일 제출

○ 회 부 : 1998년 2월 11일

## 3. 제안이유

-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노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
- 노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건강·여가선용 등의 제공시설인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설립됨에 따라
- 동 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## 4. 주요골자

-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수행할 사업을 규정함 (안 제3조)
  -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,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등
- 이용대상 및 사용료를 규정함 (안 제4조)
  - 이용대상 : 충청북도내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
  - 사용료 : 강당 30,000원 (주간 1회 2시간) 등
- 노인복지회관의 사용료 감면대상을 규정함 (안 제5조)
  - 65세이상 노인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,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단체등

- 노인복지회관은 도지사가 운영관리하되,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(안 제6조)
- 노인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함 (안 제7조)
  - 구성 : 7인 이내 (위원장 : 사회복지국장), 임기 : 3년 (연임 가능)
- 노인복지회관의 위탁운영시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(안 제9조)

## 5. 검토의견

- 0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에 근거하여
- 0 사업내용, 이용대상, 사용료, 관리주체, 운영위원회 설치 등 노인종합 복지회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0 안 제2조 (회관명칭) 및 제4조 (사용료등의 감면), 제6조 (운영관리), 제9조 (관리비 등 보조) 등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임